

예산총칙

201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736,900,000 | 22,107,000 |
| 일반회계 | 633,000,000 | 18,990,000 |
| 특별회계 | 103,900,000 | 3,117,000 |
| 공기업특별회계 | 36,600,000 | 1,098,000 |
|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| 17,000,000 | 510,000 |
|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| 19,600,000 | 588,000 |
| 기타특별회계 | 67,300,000 | 2,019,000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3,296,000 | 98,880 |
| 의료보호비특별회계 | 2,312,000 | 69,360 |
|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| 660,000 | 19,800 |
|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| 2,220,000 | 66,600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820,000 | 24,600 |
| 농공지구(단지)조성관리특별회계 | 200,000 | 6,000 |
|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| 690,000 | 20,700 |
| 치수사업특별회계 | 3,560,000 | 106,800 |
| 주차장운영특별회계 | 5,100,000 | 153,000 |
| 대지보상특별회계 | 364,000 | 10,920 |
|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| 35,000 | 1,050 |
|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| 35,460,000 | 1,063,800 |
|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| 12,583,000 | 377,490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,325,034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3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